

요약

정부는 사적연금 기능강화를 위해 납입 시 연금계좌(연금저축+IRP 추가 납입: 세제적격연금)의 세제혜택 한도를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음. 그러나 세제혜택 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및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해 수령기에 연금수급자의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음. 이는 연금소득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적용 기준에 변화가 없는 반면,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유지를 위한 소득 기준은 강화되었기 때문임. 사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해 납입기 세제혜택과 함께 연금수령 시 종합소득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등 연금수령기의 세제도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

- 정부는 연금계좌(연금저축+IRP 추가 납입: 세제적격연금)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연간 한도를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음¹⁾
 - 이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한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기능 강화 및 공적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계획의 일환임²⁾
 - 사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, 연금계좌(연금저축+IRP)의 연간 세제혜택 한도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발표함³⁾
 - 이와 함께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적연금 개혁을 연금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하였음
 - 이는 공적연금 개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소득 부족분을 사적연금으로 보충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
- 납입 시 연간 세제혜택 한도는 확대되었으나, 연금수령 시 종합과세 적용기준은 2013년 이후 연간 1,2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수령기 세제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
 - 수령기 세제 혜택 제한은 연금 수령기간을 늘리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겠으나, 본고에서는 동일 조건에서 연금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조세·준조세 부담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함
- 연금수령 시 연금계좌로부터 수령하는 연금액이 연간 1,200만 원을 넘을 경우, 연금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됨
 - 우리나라 사적연금 세제는 납입 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, 운용기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되지 않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연금수령 시 과세함

1) 기획재정부 보도자료(2022. 7. 21), “2022년 세제개편안”
 2) 기획재정부 보도자료(2022. 6. 22), “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”
 3) 기획재정부 보도자료(2022. 7. 21), “2022년 세제개편안”

- 연금계좌로 납입 시에는 납입액에 대해 12%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며,⁴⁾ 수령 시 연금액이 연간 1,200만 원 이하인 경우 3~5%의 세율로 분리과세 함
 - 연간 연금액이 1,200만 원 초과 시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적용받아 세 부담이 증가함
 - 국민연금 및 여타 소득으로 인한 종합과세 표준이 1,200만 원을 넘는다면,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연금에 대한 세율은 15% 이상을 적용받게 됨⁵⁾
 - 이 경우 연금납입 시 12%(혹은 15%)로 세액공제를 받고, 연금수령 시점에는 받은 혜택보다 높은 수준으로 과세를 받게 되어 연금계좌 납입 유인이 감소할 수 있음
- 연금소득자에 대한 종합과세 적용은 연금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지역 가입자로 전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
- 2022년 9월부터는 ‘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’ 2단계가 시작되어 피보험자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 기준이 현재 연 소득 3,400만 원에서 2,000만 원 이하로 강화됨
 - 2022년 8월까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기준이 되는 연 소득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·배당, 사업, 근로, 연금, 기타소득이 포함되며 연 소득이 3,400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⁶⁾
 - 단, 여기서 분리과세 되는 사적연금 및 이자·배당 소득 등은 연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
 - 이번 개편으로 연금계좌로부터 연금소득이 1,200만 원을 넘을 경우 국민연금 등 종합소득세가 적용되는 여타 소득이 800만 원만 넘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건강보험으로 전환됨
 -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소득과 주택, 자동차 등 자산을 함께 평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지역 건강보험료가 은퇴 이후 감소한 현금흐름 대비 부담스러운 수준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음
- 연금계좌로부터 발생하는 연금수령 시 발생할 수 있는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 상향 등 사적연금 기능 강화 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음
- 과거 연금계좌 세제혜택 한도가 연간 300~400만 원이던 경우에는 연간 한도까지 30년간 납입한다 해도 종합과세 기준 연간 1,200만 원이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었음
 - 그러나 연간 세제혜택 한도가 9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될 경우, 연금소득의 종합과세 기준 1,200만 원은 연금자산 적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
- 따라서 연금계좌 납입 시 세제혜택 한도 상향조정과 더불어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을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음

4) 연 소득 5,500만 원 이하인 자는 세액공제율 15%를 적용함

5)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는 1,400만~5,000만 원 이하 구간을 15%로 제시하고 있음

6) 이외에도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을 것,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(프리랜서 등)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(주택임대사업자는 400만 원 이하), 분리과세 금융소득(1,000만 원 초과~2,000만 원 이하)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(연 2,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)이 있는 경우는 건강보험료 별도 부과하며, 별도로 재산 요건이 있음

- 구체적으로는 연간 수령하는 연금액이 1,200만 원을 넘을 경우 연금액 전체를 종합과세하는 방식에서 1,2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1,20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과세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
 - 이자·배당 소득의 경우 종합과세 기준인 2,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, 2,00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함
 -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서 이자·배당 소득이 2,000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자의 경우, 2,00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였음
- 여타 분리과세 소득의 종합과세 전환 기준과 동일하게 연금계좌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을 2,000만 원을 넘는 경우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
 - 주택임대 임대소득의 경우 연간 2,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종합과세가 적용됨